

공인중개사협회조사 · 검사증명서

1. 조사·검사자 인적사항

소속	직급	성명	비고

2. 조사·검사기간: 년 월 일 ~ 년 월 일

3. 대상지역:

위 사람은 「공인중개사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

이
호
지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

유의사항

1. 공인중개사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이 조사·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.
2.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「공인중개사법」 제5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